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정보의 사전 입수·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및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 및 제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구인 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공정무역심사팀·해외통관지원팀과 증원한 인력 1명(행정사무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7.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 및 납세자보호팀”으로, “서기관으로 보하고”를 “서기관으로”로, “보한다”를 “보하고, 납세자보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1호부터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조직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1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3.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제3조제5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⑦ 납세자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2.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

3.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세행정 관련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별표 4의2 중 총계 “371”을 “372”로 하고, 일반직 계 “370”을 “371”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81”을 각각 “4,798”로 하고, 관세주사보 “881”을 “891”로 하며, 관세서기 “1,005”를 “1,007”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39”를 “144”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91”을 각각 “4,808”로 하고, 관세주사보 “902”를 “912”로 하며, 관세서기 “984”를 “98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39”를 “144”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명	
7)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7급 4명, 8급 2명 전문 경력관 다군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제85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와 제3조 중 “2024년 3월 30일”을 “2026년 3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납세

자보호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납세자보호팀의 소관사무는 법무담당관에서 수행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3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 음)
②기획조정관 밑에 <u>기획재정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 법무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u> 을 두며, <u>기획재정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u> 은 부이사관 또는 <u>서기관</u> 으로 <u>보하고</u> , <u>비상안전담당관</u> 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u>보한다</u> .	②----- <u>기획재정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 법무담당관 · 비상안전담당관 및 납세자보호팀</u> ----- ----- ----- <u>서기관</u> 으로----- ----- --- <u>보하고, 납세자보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 5. (생 략) 6. 삭 제 7. <u>조직운영 기본계획의 수립</u> 8. <u>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u> 9. <u>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 감독 등 총괄</u> 10. ~ 16. 삭 제 17. (생 략)	③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④ -----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 10. (생략)

11.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
부심사에 관한 업무

<신설>

<신설>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 6. (생략)

7.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⑥ (생략)

<신설>

기획재정부령 제850호 관세청과

-----.

1. ~ 10. (현행과 같음)

11. 조직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1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
직과 정원의 관리

13.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⑤ -----
-----.

1. ~ 6. (현행과 같음)

7.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
부심사에 관한 업무

⑥ (현행과 같음)

⑦ 납세자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 관련 납세자의 권
리보호요청의 처리

2.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

3.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세행정 관련 납세
자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령 제85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공정무역심사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은 <u>2024년 3월 30일</u> 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 ----- ----- ----- ----- ----- <u>2026년 3월 30일</u>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u>2024년 3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 ----- ----- ----- ----- ----- <u>2026년 3월 30일</u>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371</u>	<u>372</u>	+1
·	·	·	
·	·	·	
일반직 계	<u>370</u>	<u>371</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12</u>	<u>13</u>	+1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781</u>	<u>4,798</u>	+17
일반직 계	<u>4,781</u>	<u>4,798</u>	+17
·	·	·	
·	·	·	
관세주사보	<u>881</u>	<u>891</u>	+10
·	·	·	
·	·	·	
관세서기	<u>1,005</u>	<u>1,007</u>	+2
·	·	·	
·	·	·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u>139</u>	<u>144</u>	+5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791</u>	<u>4,808</u>	+17
일반직 계	<u>4,791</u>	<u>4,808</u>	+17
·	·	·	
·	·	·	
관세주사보	<u>902</u>	<u>912</u>	+10
·	·	·	
·	·	·	
관세서기	<u>984</u>	<u>986</u>	+2
·	·	·	
·	·	·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u>139</u>	<u>144</u>	+5